

건설업 벌칙규정



연재순서

1.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 이번호**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지는 기계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고의·과실 등 행위자 요소,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대금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범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5. 범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나).의 “범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법 제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 나. 법 제5조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
- 다. 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 라. 법 제8조에 의한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
- 마. 법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금액
- 바. 법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 사.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
- 아. 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금액
- 자. 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미지급금액
- 차. 법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 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 카. 법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지급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 타. 법 제20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부당환수 금액

6. 기간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다).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7.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3]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III.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위반금액·비율,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범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또는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또는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4) 위반행위의 수(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의 22개 위반행위 유형을 말한다.)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
- (5) 위반금액(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별 위반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2.에서 정한 기준은 1.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1.에 따를 경우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V.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정한다.

나.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 수 수 준					
	80점 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40점초과 50점까지	40점 까지
과징금 부과율	10%	9%	7%	5%	4%	3%

다. 위 II.5.가., 나., 라., 사.의 위반금액이 위 가., 나.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기본 산정기준에 곱한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30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의 범위반 전력이 많은 경우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삭 제> (2010. 12.31.)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V.2.나.(1)의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

(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

(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익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

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당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적절한 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1일까지로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前歷)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1.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때 1의2.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 때	법 제12조의3 제3항 법 제19조	100
2. 법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법 제2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나 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였을 때 나. 법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 또는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을 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탈법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였을 때	법 제20조	
3. 서면의 발급·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의2.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을 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법 제3조의4	80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4조	
5. 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을 때 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않았을 때	법 제11조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의2	60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구매·사용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5조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였을 때	법 제8조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였을 때	법 제10조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때	법 제12조의2	60
11. 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않았을 때	법 제12조의3 제1항·제2항	
12. 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7조	
13.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을 때	법 제18조	
14.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6조	
15.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7조	
16.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9조	
17.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결제하게 하였을 때	법 제12조	40
18. 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였을 때 마.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	
19. 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4조	
20. 법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관세 등을 그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5조	
21. 법 제16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6조	
2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 제7항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위반 전력별 부과점수

구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비율(B)	위반행위의수(C)	위반전력(D)	
20% 초과	4개 이상	과거 1년간: 5점 초과 과거 3년간: 8점 초과	100
10% 초과 20%까지	3개	과거 1년간: 4점 초과 5점까지 과거 3년간: 7점 초과 8점까지	80
5% 초과 10%까지	2개	과거 1년간: 3점 초과 4점까지 과거 3년간: 6점 초과 7점까지	60
5%까지	1개	과거 1년간: 3점까지 과거 3년간: 6점까지	40

3) 비고

-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는 상위 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금액의 비율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 다) 위반 전력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기준) 해당 업체가 받은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6)까지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따라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계산방법

$$\text{점수합계(T)} = \tex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 \times 0.4 + \text{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 \times 0.2 + \text{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 \times 0.2 + \text{위반전력의 부과점수(D)} \times 0.2$$

다.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

- 1) 나.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